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1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서영석・이성윤・김한규

박희승 · 문진석 · 김재원

이건태 • 이용선 • 이정문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,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

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4조제7항·제8항,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"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"을 "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및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, 요건, 운영, 지정 및 지정해제"로 한다.
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1.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 용유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유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, 교육기관, 교육 방법 및 내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	제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
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생	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
	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
	을 해제할 수 있다.
	1.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
	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
	<u>한 경우</u>
	2.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
	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
	지 못한 경우
	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
	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
	<u>우</u>
<u><신 설></u>	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
	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
	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
	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
	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
	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	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
	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

① 그 밖에 <u>윤리위원회 및 공</u>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43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정할	수	있다.
이 근	- 1	ひつ・

-----.

제20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, 교육기관,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(3) -----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<u>3</u> . (생 략)	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